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5079 |
|----------|-------|

발의연월일 : 2025. 12. 10

발 의 자 : 김원이·김한규·김영호  
서삼석·김동아·이재관  
한준호·허종식·박지원  
복기왕·허영의원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제조업 사업체 수 총 71,727개 중 중소제조업은 69,807개로 전체의 97.3%를 차지함. 종사자 수 역시 중소제조업체 199만 명(69%)으로 대기업 89만 명(31%) 대비 2배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2023년 통계청 자료). 이렇듯 중소제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은 대다수 국민이 종사하는 일터이며 우리 경제의 근간임.

한편,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도 가속화돼 상당수 기업이 후계자 부재로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의 ‘2024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의 60세 이상 CEO 비중은 2012년 14.1%에서 2023년 36.8%로 급증했음. 즉 중소제조기업 CEO의 3분의 1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남.

이에 고령 경영자의 은퇴 후 중소기업 승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폐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승계제도가 여전히 가족 간 상속과 증여 중심이라는 비판도 나옴. 일본의 사례처럼 종업원 승계 또는 인수·합병 방식의 승계를 포함하는 통합적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앞서 ‘2024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도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87.7%, ‘제3자 승계 및 M&A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64.5%로 나타났음. 중소기업 승계 관련 특별법 마련과 지원체계 구축 요구가 높은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의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기업승계 촉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화 시대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제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정 취지 및 책무(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이 법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심화로 기업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승계, 기업승계자, 경영자 등에 대한 정의와 기업승계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승계자의 책무를 부여함.

나. 중소기업의 승계 활성화 지원 등(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중소기업 승계촉진 정책을 종합·조정하여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승계 정보제공, 경영·기술, 판로지원 등의 승계 활성화 및 성장 지원, 기업승계촉진계정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기업승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기업승계지원센터 지정 및 역할 부여 방안과 이에 대한 성과관리로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중소기업의 승계에 대한 특례(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승계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제지원, 신속·간편한 승계절차 지원을 위해 「상법」에 따른 각종 합병절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합병, 영업양수, 채권자보호절차, 주식 매수 청구권, 주주 총회 소집통지 등에 대하여 공고 및 송달기간 단축, 이사회 결의 준용, 주식매수 기간 연장 등의 특례 부여와 합병절차 등에 있어 기간 단축, 부동산 등기신청, 고용보험료율 등의 특례 사항을 규정함.

라. 기업승계 중개업자의 등록·관리(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중개업자 난립 방지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등록해야 하며, 공정·성실 중개,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 등 기업승계 중개업자의 의무 사항과 의무 사항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승계자에 대하여 중개 절차상 발생하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함.

마. 권한 등의 위임·위탁과 벌칙 및 과태료(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지방중소기업청 및 시·도지사에게 대한 권한 위임,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권한 위탁 사항과 비밀 준수 및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을 강제하기 위한 비밀누설 및 뇌물죄 등의 적용 시 공무원의제 사항과 과태료, 중개업자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함.

##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심화 상황에서 후계자 부재, 자녀승계 곤란 등으로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기업승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 하는 것(이하 “가업승계”라 한다)

나. 중소기업이 인수·합병, 영업 양수·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타인에게 이

전하는 것(이하 “인수·합병형 승계”라 한다)

3. “기업승계자”란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이전 받거나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4. “경영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중개업자”란 제23조에 따라 기업승계 중개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기업승계 활성화 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기업승계자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업승계자의 책무) ① 기업승계자는 승계기업의 지속 성장과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종사자의 소득 유지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승계자는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경영자의 고령화, 후계자 부재 등으로 지속 성장·발전이 어려워 기업승계가 필요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 업종, 경영자 나이 및 경영 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294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신청을 한 기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승계 촉진 및 활성화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장 중소기업의 승계 활성화 지원 등

제7조(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 활성화 촉진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업승계 활성화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업승계 활성화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 기업승계 관련 동향, 현황 및 전망

3. 기업승계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승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업승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제23조에 따른 기업승계 중개업자,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업승계 및 성장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자의 원활한 기업승계와 승계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업승계에 관한 정보제공과 법무·회계 상담 지원

2. 경영·기술·재무 등의 자문 지원

3. 판로확대 및 해외진출 등 성장촉진 지원

4. 그 밖에 승계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승계기업 일괄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승계기업 지속 성장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일괄하여 연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승계기업을 일괄·연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 설비투자 등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그 밖에 승계기업 지속 성장에 관한 일괄·연계지원 기준, 조건,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업승계촉진계정의 설치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승계촉진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25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25조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

③ 그 밖에 계정의 수입·지출 및 운용과 회계·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융자, 투자, 출연, 보조금 등의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승계 및 승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②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은 기업승계 및 승계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업승계 및 승계기업에 우선적으로 융자지원을 하거나 융자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기업승계지원센터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 촉진 및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기업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승계 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 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외국 사례 등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제도 발굴에 관한 사항
  5. 기업승계 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을 위한 기업승계 플랫폼의 구축·운영
  6. 제23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승계 중개업자 정보의 유지·관리
  7. 그 밖에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기업승계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 운영 및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담지원센터를 지정 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기업승계 플랫폼의 구축·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업승계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과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업승계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제23조에 따른 기업승계 중개업자,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중소기업의 승계에 대한 특례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승계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소규모합병 등의 특례) 중소기업이 기업승계를 위하여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30조

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영업양수의 특례) ① 기업승계자가 중소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면서 그 양수가액이 기업승계자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기업승계자가 이사회의 승인으로 중소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업승계자는 중소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상법」 제289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영업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

2.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수한다는 뜻

④ 기업승계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

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2주 이내에 기업 승계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양수를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소기업이 「상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 제530조의2제2항에 따른 분할합병,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 및 양수(이하 “합병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 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이 합병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0조의4제1항, 제360조의17제1항, 제522조의2제1항, 제530조의7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7일 전부터 합병등을 한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이 합병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제18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① 중소기업은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등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병등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병합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이 기업승계를 위하여 합병등을 함에 있어 채무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① 중소기업이 기업승계를 위하여 합병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5제1항, 제374조의2제1항, 제522조의3제1항,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승계 기업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승계기업은 「상법」 제37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20조(소집의 통지에 대한 특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1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기업승계 관련 사건의 관할에 대한 특례) ① 기업승계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의 유형과 등기사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제113조에 따른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고용보험료율에 대한 특례) 기업승계로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기업이 합병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양수 또는 합병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연도부터 다음 보험연도까지 양수 또는 합병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제4장 기업승계 중개업자의 등록·관리 등

제23조(기업승계 중개업의 등록) ① 기업승계를 위한 합병 등 절차에 대한 컨설팅 및 중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절차 및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업승계 중개업자의 의무) ① 중개업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중개 절차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중개 목적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개업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개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지원센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비용 보조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에 따라 등록된 중개업자를 통하여 기업승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보험료, 기업실사 수수료, 중개 자문료 등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승계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보조의 지원 기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기업승계 중개업자 등록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한 경우
2.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4조를 위반하여 중개업자의 중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장 보칙

제27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제26조에 따른 중개업자의 등록 취소

제2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과태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특례를 받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1조(벌칙)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 절차 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중개 목적외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7절의 제목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을 “중소기업의 명문 장수기업 지원”으로 한다.

제62조의2, 제6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을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3조(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기업승계지원센터로 본다.